

근 저 당 권 설 정 계 약 서

1. ○ ○시 ○ ○ 구 ○ ○ 동 ○ ○ 대 ○ ○ ○ m²

부동산의표

시

2. 위 지상 라멘조 및 벽돌조 평슬래브지붕 2층 주택

1층 ㅇㅇㅇm²

2층 ㅇㅇㅇm². 끝.

위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금〇〇〇원정으로 정하고 아래와 같은 약정 하에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기 위하여 이 증서를 작성하고 다음에 기명 날인함.

2000년 0월 0일

근저당권설정자겸 채무자 △ △ △ (인)

근 저 당 권 자 ○ ○ ○ (인)

- 아 래 -



- 제1조 근저당권설정자는 채무자가 위 금액 범위 안에서 채권자에 대하여 기왕 현재부담하고 또는 장래 부담하게 될 단독 혹은 연대채무나 증인으로서 기명 날인한 차용금증서, 각서, 지급증서등의 채무와 발행배서 보증인 수반한 모든 어음채무 및 수표금상의 채무 또는 상거래로 인하여 생긴 모든 채무를 담보하고자 앞에 기재된 부동산에 순위제 ○번의 근저당권을 설정한다.
- **제2조** 장래 거래함에 있어서 채권자 사정에 따라 대여를 중지 또는 한도액을 축소시킬 지라도 채무자는 이의하지 않겠다.
- 제3조 채무자가 약정한 이행의무를 한번이라도 지체하였을 때 또는 다른 채무 자로부터 가압류 압류경매를 당하든가 파산선고를 당하였을 때는 기한의 이익 을 잃고 즉시 채무금 전액을 완제하여야 한다.
- 제4조 저당물건의 증축 개축수리 개조 등의 원인으로 형태가 변경될 물건과 부가 종속된 물건도 이 근저당권에 효력이 미친다.
- 제5조 보증인은 채무자 및 근저당권 설정자와 연대하여 이 계약의 책임을 부담함은 물론 저당물건의 하자 그 외의 사유로 인하여 근저당권의 일부 또는 전부가무효로 저당물건의 하자 그 외의 사유로 인하여 근저당권의 일부 또는 전부가무효로 될 때에도 연대보증 책임을 진다.
- 제6조 이 근저당권에 관한 소송은 채권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.